

#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22. 02. 15.

**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(사)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(이하“본 연맹”라 한다) 정관 제3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생활체육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라 한다.

**제 2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연구하고 본 연맹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농아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농아인생활체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
3. 농아인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4. 농아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농아인생활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시·도 농아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와의 교류
8. 기타 농아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

**제 4 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1인
2. 부위원장 1인
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본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 5 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
- ③ 위원은 해당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 6 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

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 7 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본 연맹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.

**제 8 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 9 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**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분과위원회 설치)** ① 본위원회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시행)**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본 연맹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.

**제14조(의견청취)**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연맹 관계직원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5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

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6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7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준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